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인권지침

■ 목 적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지침을 직원들에게 인지시키고자 한다.

1. 개 념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1조2의 제4호에서 노인학대에 관하여 정의 하고 있는데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 노인권리 보호

1) 노인인권(권리) 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아. 개인 소유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차.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카.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권 리	행동지침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권 리	행동지침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p>가.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p> <p>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p> <p>다. 목욕, 의복,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p> <p>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p> <p>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p>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p>※ 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활시설만 해당</p> <p>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p> <p>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p>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p>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들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p>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p>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p>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p>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p> <p>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p> <p>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p>
8.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p>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p>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p>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 (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p>

권 리	행동지침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p>가.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p> <p>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p> <p>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p> <p>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p> <p>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11.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p>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p> <p>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 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p> <p>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p> <p>마.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p>

2. 노인학대 유형과 증상

1)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②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③ 기타 :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유 형	정 의
신 체 적 학 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 적 학 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 기 방 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2004.9)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적 학대

구체적행위	학대 세부내용
1. 노인을 폭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노인을 발로 찬다.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노인의 몸을 벽에 밀치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노인의 머리카락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노인의 목을 조른다.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노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노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을 집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4. 신체적 해를 가질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② 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행위	학대 세부내용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용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된다.

<p>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p>3.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이겠다.” 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 협박을 한다.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노인에게 고향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 취급한다.
<p>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③ 성적 학대

구체적행위	학대 세부내용
<p>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p>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다.

④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학대 세부내용
<p>1. 노인이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p>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p>3. 노인의 재산에 관한 사용결정을 통제하는 행위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⑤ 방 입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 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이 있다. ▪ 약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 기구 등) 제공거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 단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위생 거주 환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매 등 거동 불가능 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난방 단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기, 가스, 수도 단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영양실조 <input checked="" type="checkbox"/> 탈수상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락두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왕래두절(1년 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의 배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변 위험 상태 방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죽게 내버려 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출 후 찾지 않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⑥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살기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⑦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반감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3. 노인학대 예방 방법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①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한다.
-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한다.
-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한다.
-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한다.
-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⑨ 종사자는 목욕,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119 구급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장애노인 관련 업무) 노인복지 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 방법	전화 및 서신, 온라인, 내방상담 가능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
1577-1389	
신고 내용 및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 : 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계약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에 알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 사례를 신고하고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한다.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노인복지법 제60조 양벌규정에 의해 노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행위에 대해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학대사실을 알게 된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노인의 영양상태 및 급식 위생상태(유통기한 지난 음식 등)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 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노인복지시설>

- 학대사례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 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학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작 또는 삭제하면 안 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학대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들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고 된 노인학대사례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를 받은 시·군·구는 조치결과를 즉시 시·도에 보고하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시·도는 즉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한다.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하며, 시·군·구는 시설의 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학대피해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학대 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의 격리,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

보호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시켜야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노인의 안전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학대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및 자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노인학대 처벌기준

노인학대 처벌 기준

	<p>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p>
	<p>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p>	<p>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p>
	<p>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p>	
	<p>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p>	
	<p>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p>	
	<p>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p>	
	<p>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p>	<p>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p>
	<p>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p>	<p>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17. 6. 3)</p>
	<p>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p>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